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 599 호 2018. 1. 23(화)

공 고

제2018 - 74호 군계획시설사업(공원:이순신순국공원) 공사완료 공고 ····· 1

제2018 - 8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

제2018 - 9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소로2-39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4

제2018 - 92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 10

제2018 - 103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74호

군계획시설사업(공원:이순신순국공원) 공사완료 공고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에 남해군고시 제2012-12호(2012.2.9.)로 실시계획 인가된 군계획시설사업(공원:이순신순국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원)
   ○ 명 칭 : 이순신순국공원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6	이순신 순국공원	역사 공원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89,401	경상남도고시 제2011-486호 (2011.11.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문화관광과장)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2012. 2. ~ 2017. 12.

남해군 공고 제2018 - 8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박갑0	주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하천명		사포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창선면 광천리 478번지		
	면적	0.6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1. 17. ~ 2019. 1. 16.		
	목적 및 사유	농가창고 신축에 따른 우수관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18 - 9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소로2-39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개설공사와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남해읍 서변리 일원	L=115, B=12	남해군수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개설공사	남해읍 서변리 일원	L=115, B=8	남해군수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8년 1월 ~ 2018년 3월 중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이체)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알림→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협의→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3. 감정평가 선정 및 시행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방법 :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

다. 추천기한 : 보상계획 알림 후 30일 이내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끝.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1.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중로 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721	721	-	-	-	-	-	-
1	서변리	327-2	전	243	243	장○룡	경남 남해군 남해읍 ***	-	-	-	-
2	서변리	329-6	대	2	2	정○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	-	-	-	-
3	서변리	329-7	대	10	10	김○춘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남해축산업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60-4	근저당권	-
4	서변리	329-8	전	292	292	이○주	경남 남해군 남해읍 ***	-	-	-	6분의 1
						황○희	경남 창원시 의창구 ***	-	-	-	6분의 1
						강○춘	제주시 제주대학로 ***	-	-	-	6분의 1
						강○춘	제주시 제주대학로 ***	-	-	-	6분의 1
						강○영	부산광역시 북구 ***	-	-	-	6분의 1
						강○희	전남 여수시 ***	-	-	-	6분의 1
5	서변리	328-2	전	174	174	이○진	충남 아산시 신창면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대상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위	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서변리	327-2	감나무	R20	주	2	장○룡	남해군 남해읍 ***	-	-	-	-
			대추나무	R5	주	1						
			매실나무	R15	주	1						
2	서변리	329-6	담장	블록조10*1.5(H)	㎡	15	정○동	남해군 남해읍 ***				
			대문	판넬	식	1						
			화단	조경석포함2*7	식	1						
			종려	R20	주	1						
			유자	R20	주	1						
			동백	R12	주	1						
			청목	R10	주	1						
			연산홍 등	H1.5,W2.0	주	4						
			금목서	R20	주	1						
			천리향	R7	주	1						
3	서변리	329-7	주택(1층)	블럭슬라브	㎡	29.7	김○춘	남해군 고현면 ***				
			주택(2층)	블럭슬라브	㎡	29.7						
			계단1	콘크리트 1*6	식	1						
			계단2	철재 1*5	식	1						
			심야전기 보일러	-	식	1						
			물탱크	FRP(소)	식	1						
			대문	벽돌슬라브 (철재)	식	1						
			담장	블록조15*1.5 (H)	㎡	22.5						
			바닥포장	콘크리트 15*1+2*3	㎡	21						
			지하수	소형	식	1						
			수도	-	식	1						

2.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842	842	-	-	-	-	-	-
1	서변리	330-1	전	283	283	최○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북부산 새마을 금고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86	근저당권/ 지상권	3분의 1
						성○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3분의 1
						이○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				3분의 1
2	서변리	331-1	전	200	200	김○석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	-	-	
3	서변리	320-3	전	157	157	윤○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	-	
4	서변리	319-8	전	202	202	정○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	-	-	
5	서변리	319-10	전	1	1	임○숙	경상남도 남해읍 ***	-	-	-	13분의 11
						임○호	울산광역시 중구 ***	-	-	-	13분의 2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대상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위	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서변리	330-1	매실	R15~20	주	15	최○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				-
							성○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이○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				
			감나무	R5~7	주	5						
			감나무	R20	주	1						
2	서변리	331-1	매실	R15~20	주	4	김○석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석류	R15	주	1						
3	서변리	320-3	사철나무	R15~20	주	2	윤○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유자	R10	주	1						
			자두	R5	주	1						
4	서변리	319-8	유자	R10~15	주	4	정○순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석류	R20	주	1						
			매실	R15~20	주	15						
			비파	R10	주	1						
			감나무	R15~20	주	2						
			사철나무	R80	주	1						

남해군 공고 제2018 - 92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

2. 해제 예정지내역

소재지			지적(㎡)	지정사항		해제면적(㎡)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일시	종류		주소	성명	
이동	신전	산114-7	885	1987	수원함양 보호구역	88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22 한양APT	김○숙	보호구역 기능상실
		산114-12	566			566			
미조	미조	산13	6,369	1987	재해방지 보호구역	1,182	부산광역시 동구 영초길 193번길	신○봉	보호구역 기능상실

3. 공고기간 : 2018. 01. 22 ~ 2018. 01. 31(10일간)

4. 이의신청 : 2017. 01. 22 ~ 2018. 01. 31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이내 붙임 서식에 의거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6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남해군 공고 제2018 - 103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등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4조)
다.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16조)
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2월 1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남해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입법안의 비용추계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등)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군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가 게재된 군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

제17조(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자치법규의 정비)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와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의 요약

1) 비용의 발생 요인

-

-

2) 비용추계의 전제

-

-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연평균	합계
세출	국비							
	도비							
	군비							
	소계(a)							
세입	국비							
	도비							
	군비							
	소계(b)							

4) 재원조달방안

구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재원조달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도비)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비용추계 상세내역

□ ----------.

○ ----------.

○ ----------.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 예산증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세입	○			국비/도비/군비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2. 미첨부 근거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